

용기 [] 신규검사
[] 재검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※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.		

신 청 인	상 호	
	대 표 자 성명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(e-mail)	
	사업자등록번호	

신청내용	사업소 소재지				
	설계단계검사 합격증 번호				
	용기의 종류		내용적	로트(제품)번호	수량
	[] 이음매 없는 용기		L		
	[] LPG 용기	[] 용기내장형 난방기용	kg		
		[] LPG용	kg		
		[] 사이폰용	kg		
		[] 그 밖의 용도	kg		
	[] 아세틸렌 용기		kg		
	[] 암모니아 용기		kg		
	[] 프레온 용기		kg		
	[] 염소 용기		kg		
	[] 초저온 용기		kg		
	[] 접합 또는 납땜임 용기	[] 연소기용	cm³		
		[] 그 밖의 용도	cm³		
	[] 그 밖의 용기		kg		
	[] 용기용 밸브	[] LPG용			
		[] 아세틸렌용			
		[] 그 밖의 용도			
	검사 희망일		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
의 [] 신규검사 [] 재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
검사기관의 장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 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